

**Deloitte.**



Deloitte

공급자 행동강령

(Deloitte

Supplier Code of Conduct)

# 도입(Introduction)

((●))

## 적용 대상(Applicability)

본 딜로이트 공급자 행동강령(“**공급자 행동강령**”)은 (i) 딜로이트와 계약을 체결하고 딜로이트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 (ii) 딜로이트 고객에게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딜로이트와 계약, (iii) 시장 내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비즈니스 관계(예: 제휴관계(Alliance Relationship), 기술 제휴(technology relationships), 재판매 관계(reselling relationships) 등)를 위해 딜로이트와 비즈니스 관계를 맺은 모든 개인이나 법인(“**공급자**”)에게 적용됩니다.

# 강령(Principles)



## 개관(Overview)

딜로이트의 목적은 ‘의미 있는 임팩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공급자가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을 포함합니다. 딜로이트는 공급자가 단순히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것뿐 아니라, 지역사회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지구 환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기대합니다.

본 행동강령에는 딜로이트가 공급자에게 기대하는 역할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딜로이트와 공급자 간에 체결하는 계약에 본 행동강령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며, 만약 계약 조항 중에 본 행동강령 보다 더 엄격한 내용이 있다면 해당 계약 조항이 더 우선 적용됩니다.

공급자는 비즈니스를 운영하거나 수행하는 관할 지역의 해당 법률을 준수하는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구축해야 합니다. 딜로이트는 공급자가 본 행동강령을 준수할 것을 기대하며,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따라야 합니다.

모든 공급자는 비즈니스 운영과 관련하여 이러한 기준에 부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급자는 본 행동강령의 기대에 부합하고 이를 준수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공급자는 자체 공급망(Supply Chain)내에서도 이와 유사한 기준을 적용할 것이 기대됩니다.

딜로이트 요청 시 공급자는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설문, 자료 제공, 추가 사실 등의 협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딜로이트는 행동강령 위반을 매우 심각하게 다루며, 공급업체는 위반 사실 또는 의심 사항 발견 시 즉시 딜로이트에 보고해야 합니다. 본 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 공급자가 자체 조직 및 공급망에 대한 감사, 그 결과에 대한 보고, 시정 조치 계획(corrective-action plans) 수립 권고 또는 요구, 비우선협상대상자(nonpreferred supplier) 지정 또는 이와 유사한 조치가 공급자에게 취해질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딜로이트와의 계약이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 인권(Human rights)

### 인도적 대우(Humane treatment)

공급자는 품위와 존중으로 근로자를 대우해야 하며, 열악하거나 비인간적인 환경에 처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불법적 이주 강요 또는 강제 이주를 유발해서는 안 됩니다.

### 괴롭힘(Harassment)

공급자는 성희롱, 위협 또는 괴롭힘 신고에 대한 보복을 포함하여 괴롭힘을 허용하지 않는 문화와 근무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 노동(Labor)

### 강제 노동(Forced labor)

관련 법률 및 적용 가능한 기준에 따라, 공급자는 노예제 또는 이에 준하는 관행에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공급자는 강제 또는 비자발적 노동을 사용하거나, 허위의 명목, 위협, 강압을 통해 개인에게 업무/서비스 제공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업무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합의에 기반한 조건 하에서 수행되어야 합니다. 공급자는 근로자의 신원 또는 이민 관련 서류를 보관, 파기하거나 은폐, 압수, 몰수하거나, 근로자가 해당 서류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 또는 불허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공급자는 비전문 직종의 이주 근로자에게 채용, 이동, 또는 이주 절차 처리와 관련된 어떠한 비용이나 수수료도 부담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 **불법 아동 노동(Unlawful child labor)**

공급자는 적용 가능한 기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 운영 과정에서 어떠한 형태의 불법 아동 노동에도 관여해서는 안 되며, 공급망 내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형태의 불법 아동 노동에 대해서도 이를 유발하거나 조장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존중, 공정한 대우(Respect and Fair Treatment)**

공급자는 모든 구성원에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또한 공급자는 관련 법률에서 보호하는 사항에 기반하여 어떠한 차별도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입사 지원자 및 임직원은 업무 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델로이트는 공급자 임직원 또한 공정한 보상 기준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받을 것을 기대합니다.

### **임금, 근로시간 및 기타 조건(Wages, working hours, and other conditions)**

공급자는 모든 임직원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적용 가능한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여기에는 법정 최저임금 또는 현지 업계 기준에 부합하는 임금 중 더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 법률에 따라 의무화된 휴게 및 휴식시간을 준수하는 것, 그리고 근무지 내 임직원의 보건 및 안전을 확보하는 것과 관련된 법률, 규정 및

기준이 포함됩니다.

### **결사의 자유와 비보복(Freedom of association and non-retaliation)**

공급자는 비즈니스 기준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하며, 보복, 위협, 또는 괴롭힘에 대한 우려 없이 임직원이 경영진과 공개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명확한 의사소통 채널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공급자는 결사의 자유에 대한 근로자의 법적 권리를 존중하며, 임직원이 합법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할 권리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 **건강 및 안전(Health and safety)**

공급자는 근로조건과 관련한 법적 최소 요건을 충족하는 것 이외에도,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사고와 부상 및 유해한 노출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환경(Environment)**

#### **자원 효율성, 폐기물 최소화 및 재생에너지(Resource efficiency, waste minimization, and renewable energy)**

공급자는 순환경제 기반의 사업 관행 및 기타 조치를 통해 자원 효율성을 개선하고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며, 에너지, 원자재, 물, 연료 등을 포함한 자원 소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공급업체는 발생하는 폐기물(고형 폐기물 및 폐수를 포함)의 양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매립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환을 확대하는 한편 재사용 및 재활용을 증진해야 합니다. 더불어 공급자는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혁신과 실천 방안을 개발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 **오염 및 배출 감소(Pollution and emissions reduction)**

공급자는 정책, 관행 및 운영 전반에 걸쳐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토양, 수질, 대기 중 유독성 및 유해 오염물질의 배출을 예방해야 합니다.

또한 공급자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추적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공개 보고하며, 과학 기반 기준에 부합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아울러 공급자는 자사의 협력사에게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추적하고 과학 기반 기준에 부합하는 감축 목표를 설정하도록 요구하거나 기대 수준을 설정할 것을 권장합니다.

## 자연(Nature)

공급자는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자연 생태계의 회복탄력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공급자는 자연에 대한 자사의 영향을 파악하고, 가치사슬 전반에서 생물다양성 손실을 줄이기 위한 정책 및 관행을 준수하고, 운영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공급자는 지역사회가 안전하고 깨끗한 식수에 접근하지 못하게 할 정도의 과도한 물 사용을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 정직성, 윤리, 반부패(Integrity, ethics, and anti-corruption)

### 비즈니스 정직성(Business integrity)

공급자는 어떠한 불법 또는 비윤리적 행위에도 관여해서는 안 되며, 공정한 사업 관행의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공급자는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경쟁사와의 정보 공유와 관련된 사항 등을 포함한 모든 적용 가능한 경쟁 및 독점금지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아울러 공급자는 임직원이 불법 또는 비윤리 행위를 보고할 수 있도록 자체 기밀 신고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장려,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부패, 뇌물수수 및 금융범죄(Corruption, bribery, and financial crimes)

공급자는 모든 형태의 뇌물을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관행을 적용하고, 부패 방지 노력에 협력해야 합니다. 공급자는 뇌물을 제공하거나 수수해서는 안 되며, 제3자가 공급업체를 대신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도록 유도하거나 이를 허용해서도 안 됩니다. 공급자는 딜로이트를 포함한 제3자와 함께 또는 이를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딜로이트 등 제3자의 부패방지 및 뇌물금지 관련 법률 위반을 유발해서는 안 됩니다.

공급자는 자금세탁, 테러 자금 조달, 적용 가능한 제재 및 수출통제 관련 법률, 규정 위반, 또는 기타 금융범죄 활동에 관여하거나 이를 위해서 제3자를 고용하거나 지원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공급자는 경제 제재, 금수조치, 수출통제 및 기타 무역 제한을 포함하여, 제품 및 서비스의 수입, 수출을 규정하는 모든 적용 가능한 무역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선물, 유흥, 접대(Gifts, entertainment, and hospitality)

공급자는 합리적인 제3자의 관점에서 비즈니스 결정에 부적절한 영향을 끼칠 의도가 있거나 비즈니스 거래의 객관성에 손상을 끼칠 것으로 여겨지는 선물, 유흥 또는 접대를 제공, 수락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 기밀 유지 및 개인정보 보호(Confidentiality and privacy)

공급자는 적용 가능한 법률, 규정 및 계약상 요구사항에 부합하도록 기밀정보와 개인정보의 보호, 수집 및 적절한 취급과 관련한 의무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

공급자는 편견, 이해상충 또는 타인의 부적절한 영향이 전문적 판단과 책임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딜로이트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업무와 관련된 이해상충이 있는 경우에는 명확히 고지하여야 합니다.

## **분쟁 광물(Conflict minerals)**

공급자는 딜로이트에 판매되는 모든 제품에서 분쟁광물(EU 분쟁광물 규정 또는 미국 도드-프랭크법(Dodd-Frank Act) 제1502조에서 정의된 바에 따르며, 각 규정의 개정본 또는 이를 대체하는 법률, 규정을 포함함)의 사용을 배제해야 합니다. 또한 공급자는 자사 제품에 사용되는 해당 광물의 공급원(원산지 국가 포함)을 식별할 수 있도록 실사 절차를 마련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 **보안 서비스(Security services)**

공급자는 자신이 고용하거나 투입하는 보안 인력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공급자는 고문, 신체적 상해,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대우를 초래하거나 개인의 결사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에 관여하는 민간 또는 공공 보안 서비스를 고용하거나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 **윤리적 기술(Ethical technology)**

공급자는 인공지능을 포함한 기술 사용과 관련하여 적용 가능한 규정, 법률 및 업계에서 인정되는 신뢰할 수 있고 윤리적인 기술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공급자의 기술 설계 관행은 투명해야 하며, 결과는 이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공급자는 개인정보 보호 권리를 존중하고, 포용성을 증진하며 편향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기술을 설계, 개발, 사용해야 합니다.

## **소셜 미디어(Social media)**

공급자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괴롭힘, 명예훼손, 차별 또는 불법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공급자는 딜로이트를 대리하거나 대표하는 것처럼 행동하거나 발언하여, 승인 없이 딜로이트 명의로 해석될 수 있는 의견을 표현해서는 안 되며, 자신을 딜로이트로 사칭해서도 안 됩니다. 공급업체는 소셜 미디어의 적절한 사용에 대해 임직원을 교육해야 합니다.

# 위반사항 보고(Reporting violations)



## 의심되는 또는 실제 위반 사항 보고(Reporting suspected or actual violations)

딜로이트는 투명하게 조사를 수행하며, 조사 진행 중 관련 정보는 업무상 필요한 사람(need to know)에게만 공유되어 기밀을 유지합니다. 또한 비보복 정책(non-retaliation policy)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관련 조사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한 어떠한 보복 행위도 금지합니다.

공급자 및 그 소속 임직원은 본 행동강령에 대한 위반이 의심되는 행동이나 위반 가능성을 발견한 경우, 이를 해당 딜로이트 업무 담당자에게 보고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만약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않을 경우에는 Deloitte Korea의 윤리담당임원(Seung Chan Park, [separk@deloitte.com](mailto:separk@deloitte.com))에게 보고할 수 있으며, 이메일 또는 Deloitte.com의 [applicable contact form](#) 페이지를 통해 보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귀하는 제3자(외부 업체)가 운영하는 신고채널인 Deloitte Speak Up을 통해 윤리 관련 우려 사항을 제기하거나 관련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신고채널은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됩니다.

본 공급자 행동강령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procurement-support-services@deloitte.com](mailto:procurement-support-services@deloitte.com)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http://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provides leading professional services to nearly 90% of the Fortune Global 500® and thousands of private companies. Our people deliver measurable and lasting results that help reinforce public trust in capital markets and enable clients to transform and thrive. Building on its 180-year history, Deloitte spans more than 150 countries and territories. Learn how Deloitte’s approximately 460,000 people worldwide make an impact that matters at [www.deloitte.com](http://www.deloitte.com).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 2025.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Global.